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바,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안 별표 1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2순위 공급권 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별표 2 제2호가목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으로 결정한 정비기반시설 및 기반시설(이하 이 별표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기반시설등의 부지의 종전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 201 - 3384